



8. 교육훈련

8.1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공사는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정의하고 이들이 안전활동을 실행하는데 적절한 역량을 갖추도록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실행 및 유지한다.

8.1.1 적격성 보장

가. 공사는 철도안전관리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안전업무수행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격요건의 충족, 적절한 교육훈련 이수 또는 실무경험 확인 등에 근거하여 적격성을 보장한다.

- 1) 철도안전법령에 의한 철도종사자
- 2) 안전관리체계 책임자
- 3) 본사 및 현업의 철도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및 계약자
- 4) 기타 최고경영자가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결정한 자

나. 공사는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 적절한 교육, 훈련 또는 경험에 근거하여 적격함을 보장하여야 하고, 공사는 이러한 방식을 갖추기 위하여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관리한다.

8.1.2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의 수립

가. 공사는 문서화된 안전업무 수행자의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을 수립, 실행 및 유지한다.

나. 공사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을 수립 관리한다.

- 1) 인적자원관리를 위한 조직의 구성 및 운영
 - 가) 전반적인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운영할 조직을 구성, 운영
 - 나)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운영 결정을 내리는 책임이 수반되는 직책의 확인 등
- 2) 안전 직무의 확인
 - 가) 안전업무 수행자의 정의와 함께 필요 안전 직무의 확인
 - 나) 공사의 방침에 따라 정의한 안전업무 수행자와 「철도안전관리체계」 8.1.1(적격성 보장)과의 연계
- 3) 직무별, 계층별 필요 역량(실무경험, 교육 및 훈련결과 등)을 확인
- 4) 해당되는 분야의 직무별, 계층별 필요 적성 및 신체 적합성 확인
- 5) 인적자원관리 활동의 정기적 점검 및 시정조치
 - 가) 직무별 계층별 인적자원관리 활동의 정기적 점검 및 시정조치 방안
 - 나) 직원이 교육 및 업무 지침을 준수하고, 필요 시 시정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보장



- 6) 사고 및 사건이나 장기적인 업무결근 등의 경우 특별 조치 방안
- 7) 직무내용을 감안하여 안전업무 수행자를 분야별로 배정 방안
- 8) 안전업무 수행자에 대한 양성 및 확보 대책
- 9)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운영절차 등

8.1.3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의 일관성

공사는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내 직무별, 계층별 교육훈련계획 등이 일관성을 유지하며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한다.



8.2 교육훈련

공사는 안전업무 수행자에 대한 교육훈련 필요성(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주기적인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 실행하여야 하며, 교육훈련 평가결과가 안전업무 수행자에게 피드백 되어 안전업무 수행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차기 교육계획 수립 시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업무 수행자에 대하여 교육훈련계획을 수립, 실행 및 유지한다.

8.2.1 교육훈련 필요성 파악

- 가. 공사는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에 따라 직무별, 계층별 안전업무 수행자에 대한 교육훈련 필요성(요구사항)을 파악한다.
- 나. 교육훈련 필요성(요구사항)은 주기적인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사의 환경변화나 안전업무 수행자의 적정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적격성 기준을 파악하여 주기적인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한다.
- 다. 교육훈련 필요성(요구사항)에 따라 교육훈련 대상에는 직원, 계약자 및 이해당사자를 포함한다.
- 라. 교육훈련 필요성 파악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교육훈련 시행 및 평가에 따른다.

8.2.2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가. 공사는 안전업무 수행자의 직무 적격성 확보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 시행하며, 교육훈련 시행 및 평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공사의 「교육훈련규정」 및 「9호선운영부문 교육훈련운영규정」에 따른다.

1) 교육훈련 필요성(요구사항) 분석

- 가) 교육훈련 필요성(요구사항)은 주기적인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서 “철도안전관리체계 8.1.2(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의 수립)” 기본방침에 준하여 분석되어야 한다.
- 나) 공사의 환경변화나 안전업무 수행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교육훈련 필요성(요구사항)을 파악한다.

2) 교육훈련 목표설정

- 가) 교육훈련 목표설정은 안전업무 수행자의 안전의식의 함양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수준과 업무숙련을 향상하기 위하여 설정
- 나) 교육훈련의 목표는 “철도안전관리체계 8.1.2(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의 수립)” 기본방침에 따라 설정
- 다) 교육훈련의 성과를 기반으로 설정
- 라) 목표는 실천 가능하여야 하며, 가능한 정량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설정

3) 교육훈련 계획수립



- 가) 교육훈련 대상의 선정
 - (1)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에 의한 안전업무 수행자의 책임, 능력 등 고려
 - (2) 안전업무 수행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위험도 고려
 - 나) 교육훈련의 시기, 과목 및 시간
 - (1) 운전업무종사자, 관제업무종사자에 대한 철도안전에 관한 교육은 분기별 6시간 이상 시행하며, 교육내용에는 철도안전법령 및 안전관련 제 규정, 철도 운전 및 관제이론 일반, 철도사고사례 및 사고예방대책, 비상시 응급조치 및 대책 등을 포함
 - (2) 그 외 안전업무수행자에 대한 철도안전에 관한 교육은 분기별 3시간 이상 시행하며, 교육내용에는 철도안전법령 및 안전관련 제규정, 철도사고사례 및 사고예방대책, 비상시 응급조치 및 대책 등을 포함
 - (3) 철도안전에 관한 교육 이외의 교육훈련의 시기, 과목 및 시간은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에 따라 결정
 - 다) 교육훈련을 위한 강사, 시설 및 장비
 - 라) 교육훈련의 평가방법 및 결과의 기록 유지 방안
 - 마) 교육훈련을 위한 자원조달 및 목표관리 방안
 - 바) 교육훈련 효과에 대한 평가방법
 - 사) 계약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방안 마련 등
- 4) 교육훈련의 시행
- 가) 안전업무 수행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시행한다.
 - (1)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및 교육훈련 필요성(요구사항)의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교육훈련 수준에 알맞은 교육생을 선발
 - (2) 교육을 실시할 때는 필요한 교육내용을 포함시켜 교육 과목을 편성하여 교육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
 - (3) 이전의 교육훈련을 파악하여 반영
 - 나) 교육훈련은 강의(이론)및 기능(실습)교육을 병행하여 실시 가능
 - 다) 교육훈련 시행 시 적합한 교육교재와 적절한 교육장비 등을 갖추
 - 라) 교육훈련 담당자는 공사의 「교육훈련규정」 및 「9호선운영부문 교육훈련운영규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또는 공사의 방침에 따름
 - 마) 교육훈련 실시 후 교육훈련 일지를 작성하고 교육생의 서명을 받아 관리
 - 바) 교육훈련 일지에는 교육명, 교육구분, 교육기관, 교육방법, 교육일자, 교육시간, 교육강사, 교육내용 등의 내용이 포함
- 5) 교육훈련 평가
- 가) 교육훈련 실시 이후 교육훈련 평가 실행



나) 교육훈련 평가 시기는 공사의 방침에 의한다.

6) 관련 기록의 보유 방안

7) 기타 공사에서 정하는 사항

나. 교육훈련계획 수립 주기는 1년 단위로 한다.

8.2.3 교육훈련 평가결과의 통보

가. 교육훈련 평가결과가 안전업무 수행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피드백 되도록 한다.

나. 교육훈련 평가결과의 피드백 방법은 다음과 같고, 세부적인 내용은 공사의 「교육훈련 규정」 및 「9호선운영부문 교육훈련운영규정」에 의한다.

- 1)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에 의한 안전업무 수행자 스스로 역량 수준 파악
- 2) 안전업무수행자의 부족 역량 향상 방안
- 3) 차기 교육계획에 반영
- 4) 기타 공사에서 정하는 사항 등